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1
----------	-----

제안연월일 : 2013. 10. 28.

제안자 : 이용범·류수용 의원  
(찬성자: 9인)

## 1. 주 문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보좌기능의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통하여 현안문제와 정책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제반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임

## 3. 이 송 처 : 안전행정부

## 4. 첨 부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 5. 참고사항 : [ 별첨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한민국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대표기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지방의회가 전문적인 정책보좌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행정이 활성화되어 지방의회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양적, 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지원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 개인의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회 보좌기능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다.

2013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별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에게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제도적 지원마련을 위하여 시·도의회 의원에게 1인의 보좌 직원을 두도록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시·도의회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신설)
- 나. 지방의회 의원 보좌직원에게 대한 임용권은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둠(안 제33조의2제3항 신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의원의 보좌직원) ①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좌직원의 직무, 보수,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좌직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현 행	개 정(안)
지방자치법	<신 설>	<p>제33조의2(의원의 보좌직원)</p> <p>①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보좌직원의 직무, 보수,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보좌직원은 해당 지방의 회의 의장이 임명한다.</p>